

#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2. 12(금) 평창군수(민원봉사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9(금)
- 다. 상정일자 :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 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3. 12. 22)상정 · 의결

## 2.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 (민원봉사과장 이경식)

-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1994년 12월 29일 제정·운영하였으나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평균 2천만원 정도의 소규모로 행정력낭비 및 재정운영상 비효율성 등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의 의거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를 94년에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,
  -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2천만원인 우리군의 실정을 비추어 볼 때 재정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

-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**

**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